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신보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7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4.

발의자 : 신보라 · 김성찬 · 박덕흠
김석기 · 박명재 · 하태경
이종배 · 이우현 · 송희경
문진국 · 이학재 · 김선동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· 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우선적으로 적용됨.

그럼에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.

주요내용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 ·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

의제기 절차 조항,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,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(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42條(過怠料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자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</u></p> <p><u>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</u></p>	<p>第42條(過怠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